

시 방 서

1. 사 업 명 : 『DDP 치안센터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』 공사

2. 과업목적

: DDP 치안센터 이전운영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화, 네트워크, 출입통제, 전관방송, CCTV를 설치하여, DDP의 시설보안 및 안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,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

4. 과업내용

- 치안센터 : 전화, 네트워크, CCTV, 출입통제, 전관방송, 비상호출 설치
- 운영지원실 : 전화, 네트워크, CCTV, 출입통제, 전관방송 설치

5. 과업 세부 사항 (세부내용 및 과업절차)

- 통신설비는 DDP 전체 설비와 연동하도록 설치함.
- 통신설비를 설치하고, 종합상황실의 통합 SI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게 함
- 통신설비를 설치 시 DDP 각종 행사, 전시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- CCTV는 현 시스템 사용(1/3"CMOS, 2메가픽셀) 이상의 품질로서 화각과 줌 배율 등은 보안 대상물을 충분히 보일 수 있어야 하며, 치안센터에서도 녹화와 연동이 가능하게 함
- 주요 자재는 사전 협의와 검수 후 사용토록 함.
- 외부 설치기구 등의 자재는 기존 장비와 호환가능하게 동일 자재로 설치
- 노출되는 배관은 STEEL PIPE로 시공
- 천장안의 배관은 방수 플렉시블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
- 공사 후 준공서류(공사사진, 도면, 매뉴얼 등) 제출

6. 기타 (과업수행 일반사항)

가. 일반사항

- 1) 본 공사는 서울디자인재단(이하 '발주기관')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.
- 2) 공사수행은 최신의 전문기술력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공사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

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-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-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공사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.

나. 과업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

- 1) 공사계약 후 시방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,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공사금액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.
- 2) 공사기간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다.

다. 과업수행 성과물

- 1) 공사 후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 공사 후 발주기관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 -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라. 재공사의 실시

- 1) 발주기관의 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.

마. 비밀의 준수

- 1)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